

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10. 16. 제천시장
나. 회부일자 : 2007. 10. 16.
다. 상정일자 : 2007. 10. 22.(제1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자치운영팀장 이춘호)

가. 제안사유

- 법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현혈 참여 확대 및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[2006. 11. 1(19723호)]에 따라,
-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한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 제4항 신설)
-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 포함
(안 제18조 제2항)
- 현혈 참여 시 공가 인정(안 제22조 제6호 신설)
-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 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 제1항 별표3 개정)
-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·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·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(안 제2항 및 제3항 신설)

- 금요일, 토요일, 공휴일 숙직자에 대한 당직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(안 제7조 제4항 별표4 개정)

3. 검토의견

- 본 조례는 2006년 11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조항 신설과 일부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
-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신설 사항과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장려정책의 지원과 공직사회의 헌혈참여의 확대, 금요일, 토요일, 공휴일 전 날 숙직자에 대한 당직비를 현실에 맞도록 지급하는 규정,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.
-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2007. 9. 18~10.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질의답변 요지

“없 음”

5. 소수의견

“없 음”

6. 토론요지

“없 음”

7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8. 심사보고 불임서류

-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 끝.